산업통상자원부

# 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보도 일시 | 2022. 12. 25.(일) 11:00 <12.26.(월) 조간> | 배포 일시 | 2022. 12. 23.(금) |
|---|---|---|---|

| 담당 부서 | 소재부품장비협력관<br>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규봉 (044-203-492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현섭 (044-203-4921) |

##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

**- 공모('22.12.26) ▸ 설명회('23.1.10) ▸ 지정('23.上) 추진 -**

**- 기업 투자환경 혁신, 초격차 기술선점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-**

1. 공모 개요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'22.12.26.(월) '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' 지정**을 위한 **공모 절차**를 **개시**하였으며,

※ 추진 근거 :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
○ **'23.2.27(월)**까지 광역 시·도지사,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**를 **접수** 받을 예정이다.

※ 제출 서류 : △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), △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(공고문 첨부), △관련 증빙 자료 등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**지정 분야**는 지난 11월4일 **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**(위원장 : 국무총리)의 **심의·의결**을 거쳐 선정된 **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** 관련 **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**, 그리고 이와 관련된 **국가첨단전략산업**이다.

≪ 국가첨단전략기술 ≫

※ 상세 내용은 11.4일자 보도자료(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) 참고

❶ **(반도체)** D램·낸드플래시 등 **메모리 반도체**, 이미지센서,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(DDI), 파운드리 등 **비메모리 반도체** 및 **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**

❷ **(디스플레이)** AMOLED 등 **OLED 디스플레이 패널**, 친환경 QD, 마이크로LED, 나노LED 등 **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** 관련 기술

❸ **(이차전지)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**, 리튬이차전지용 **고용량 양극소재**, **차세대 리튬이차전지** 관련 기술

**≪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≫**

○ 국가첨단전략기술을 **연구개발·사업화**하거나,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하여 **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**하는 사업

○ 국가첨단전략기술과 **직·간접적 관련성**이 높고, **산업 생태계 혁신**을 위해 필요한 **전·후방 산업***

* 例 : (기술)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·소자기술 → (산업)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필요한 후방소부장·팹리스·디자인하우스, 전방패키징·테스트 등

□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,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*로 **지정할 수 있는 지역**은 아래와 같다. (①~③ 중 어느 하나)

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**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**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

②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**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**을 추진하는 기업이 **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**하는 지역

* 1.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
2.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
3.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·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**中 어느 하나 만족 필요**

③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지정된 **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*** 중 **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**된 지역

* 현 황(총 5개) : 경기용인(반도체), 충북청주(이차전지), 충남천안·아산(디스플레이), 전북전주(탄소소재), 경남창원(정밀기계) ('21.2월 지정)

□ 산업부는 **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**(또는 기업) 중 **법정 지정 요건***을 충족한 **후보 특화단지**를 대상으로 수요·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, 국내·외 기업 유치 계획,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**종합적으로 평가****하고,

* 전문인력·기반시설 확보 가능성,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(시행령 제26조)
** 입지·경제, 기술별 전문가로 구성된 (가칭)첨단전략산업 기업투자 전문위원회(법 제9조)

○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, **내년 상반기 개최**될 **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**(위원장 : 국무총리) 의결을 통해 **특화단지를 지정**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,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**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**도 마련하여, 특화단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.

□ 산업부는 **'23. 1.10(화)**에 **'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'**를 개최하여, 특화단지 추진 방향, 지정 절차,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**안내**하고, 관련 **질의응답 시간** 등을 가질 예정이다.

## 2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비전 및 지원 내용

□ 최근 미국,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**글로벌 공급망 재편**으로 인해, 첨단 기술력,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**첨단전략산업 경쟁력**이 **국가 경제안보 자산**으로 격상됨에 따라,

* 美(반도체과학법, IRA법 등), 中(중국 제조2025 등) 등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, 과감한 지원조치를 추진 중

○ 정부는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*를 지정하여,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**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**를 점유하고, 첨단전략산업의 **안정적 생산거점 역할**을 수행할 수 있는 **글로벌 산업 클러스터**로 신속히 육성하고자 한다.

* 법 제2조(특화단지 정의) :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·연구·교육 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·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

□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*에 대해 입지·인프라·투자·R&D·사업화 등을 **전방위적**으로 지원할 예정이며,

○ 이외에도 **추가적인 지원**을 위해 「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등에 대한 **국회 개정 절차**가 진행되고 있다.

* (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) 인·허가 처리기간 단축(30일→15일), 공공기관 예타 특례 조항 신설 등, (조세특례제한법)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

≪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내용 ≫

○ 특화단지 운영·조성에 필요한 **“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”** 및 용수, 폐수 처리 시설 등 **“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”** 지원

- 「산업입지법」, 「산업집적법」 등에 따른 **인·허가 사항 신속처리** 추진

○ 글로벌 첨단 산업 투자 경쟁 속, **“투자 환경 개선”**

- 국가전략기술 관련 **사업화 시설 투자, R&D**에 대한 **세액 공제**

-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**공장 용적률 한도**를 **최대 1.4배 완화***

* 절차 : 산업부 요청 →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→ 시·도지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, 법제처 심사중)

- **국·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** 감면, 각종 **부담금**(농지보전,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) **감면** 등 추진

○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**“R&D 및 사업화 촉진”** 지원

- 정부 **R&D 예산 우선 반영**, **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** 우선 선정 등

-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**기업 실증 지원**, 수요기업 연계 **양산 테스트** 등

□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**첨단전략산업 外 분야**에 대해서도 **국내 기업의 기술개발·사업화 역량** 강화, **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** 등을 위해 다양한 **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**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지난 10월 **“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”** 발표에 따라 수요·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, 핵심 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위한 **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**을 검토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참 고**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합동 설명회 개요**

## 1. 개 요 ※ 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

□ **(일 정)** ‘23. 1.10 (화) 10:00 ~ 11:00

□ **(장 소)**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)

□ **(참석자)** 산업부(소재부품장비협력관 등), 전담기관(KIAT), 관련 지자체, 기업, 중앙행정기관 등

## 2. 주요 내용

□ **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(안)’** 발표 (산업부)

*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(‘22.11.4) 의결 안건

○ 특화단지 신청 자격(지정 분야, 요건, 지역 등), 특화단지 지정 절차, 특화단지 육성계획서(공고문 첨부) 작성 지침 안내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**향후 일정 안내** (산업부)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**질의 응답** (산업부·KIAT)

○ 특화단지 지정 계획 **공모**(‘22.12.26) **이후**, 지자체, 기업 등 **신청권자로부터 사전에 질의서 요청** 예정

## 3. 세부 일정표(안)

| 시 간 | | 내 용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10:00~10:01 | (1') | **개 회** | - |
| 10:01~10:04 | (3') | **모두 발언** | **소재부품장비협력관** |
| 10:04~10:20 | (16') | **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발표 및 향후 일정 안내** | 산업부 |
| 10:20~11:00 | (40') | **질의 응답** | 산업부·KIAT |